

	<h2 style="margin: 0;">인센티브 규칙</h2>		규정번호	6-3-10
			제정일자	2006.06.01
			개정일자	2013.06.01
			개정번호	Ver.3 총페이지 2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동양미래대학교 또는 동 산학협력단 소속 교직원(연구원 포함)의 연구 등의 각종 산학협력활동과 연구활동 장려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급하는 인센티브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인센티브 구분) 산학협력단의 인센티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
1. 사업성과장려 인센티브 : 대외 산학협력 과제의 유치를 장려하고, 그 성과의 제고를 위하여,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 완료한 과제에 대하여 지급하는 인센티브
2. 사업수행 인센티브 : 대외 산학협력 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활동비성 인센티브

제3조(인센티브 지급대상자) ① 산학협력사업과 관련된 인센티브 지급대상자는 다음과 같다.

1. 사업단 : 집적과제의 경우, 총괄책임자가 소속되어 당해 사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사업단(이하 사업단, 센터, 연구소 등 포함)의 구성원
 2. 과제 수행자 : 세부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과제책임자, 연구원, 사무원
- ② 제1항의 인센티브 지급대상자가 사업기간동안 타 기관으로 이적하였거나, 퇴직 등의 사유로 재직상태가 아닌 경우, 해당 인센티브는 산학협력단 수입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③ 사업단이 폐쇄 또는 청산되거나, 과제수행자가 권리를 포기한 때에는 당해 인센티브 금액은 산학협력단 수입으로 한다.

제4조(인센티브 지급기준) ① 산학협력단 단장은 외부연구과제의 유치를 장려하기 위하여 과제수행자가 지정하는 사업단에 일정액(율)의 사업성과장려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.

- ② 사업수행 인센티브는 “산학협력단 기관공통지원경비(OH) 관리 규정”에 규정된 OH 총액을 기준으로 60%는 산학협력단 수입으로 하고, 그 나머지는 과제 수행자 인센티브로 지급한다.
- ③ OH가 10% 미만인 경우는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나, 사업비의 특성에 따른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사전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OH금액의 40%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센티브로 지급할 수 있다.
- ④ 사업단 및 과제수행자에 대한 인센티브의 지급범위와 비율은 원칙적으로 총괄책임자가 정하되, 산학협력단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- ⑤ 인센티브 지급기준은 제1항~제4항에 규정된 사항을 원칙으로 하되, 특별한 사유가

있는 경우는 총괄책임자가 산학협력단장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.

제5조(인센티브 재원) 인센티브는 당해 사업비중에서 징구한 OH를 재원으로 한다.

제6조(인센티브 지급시기) 인센티브는 사업이 종료된 후 지급한다.

제7조(인센티브 지급방법) 사업성과장려 인센티브는 과제수행자에게 관련 세법을 준수하여 지급한다.

부 칙

- 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(2) (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일 당시 수행중인 사업은 본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.

부 칙

- 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2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